

(20 년도)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(갑)

(앞쪽)

관 시·군·구	납세의무자성명 (법인명 또는 단체명)	주 민 등 록 번 호 (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(단위: m², 원)

구분	① 과 세 면 적	해 당 연 도(년)		직 전 연 도(년)	
		② 감면 후 공시가격	③ 부과된 재산세액	④ 감면 후 공시가격	⑤ 표준세율 재산세액
합계					

번호	⑥ 소 재 지	⑦ 지목	⑧ 총면적	⑨ 과세면적	해 당 연 도(년)			직 전 연 도(년)	
					⑩ 개별공시지가	⑪ 감면율	⑫ 감면 후 공시가격	⑬ 개별공시지가	⑭ 감면 후 공시가격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동일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.

1. ③ 부과된 재산세액: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.(단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.)
2. ⑤ 표준세율 재산세액: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[재산세과세표준(= ④ 감면 후 공시가격 ×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) × 세율 - 누진공제액]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.

[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]

과 세 표 준	세 율	누진공제액
5천만원 이하	0.2%	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0.3%	50,000원
1억원 초과	0.5%	250,000원

3. ⑦ 지목: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. 예) 대지, 공장용지,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 등
4. ⑧ 총면적: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.
5. ⑨ 과세면적: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.
6. ⑩ 개별공시지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(㎡)당 가액(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
7. ⑪ 감면율: 해당 연도의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·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.
8. ⑫ 감면 후 공시가격: [(⑨ 과세면적 × ⑩ 개별공시지가) × (1 - ⑪ 감면율)]을 적습니다.
9. ⑬ 개별공시지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(㎡)당 가액(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
10. ⑭ 감면 후 공시가격: [(⑨ 과세면적 × ⑬ 개별공시지가) × (1 - ⑪ 감면율)]을 적습니다.

[별지 제4호의3 서식(2)] <개정 2009.5.12>

[illegible]

297mm×210mm[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]